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법원의 명령 등〉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42호)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불법정보 규제 개관	3
2.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법원의 명령 등(안 제44조의11 신설 등) ...	8
3.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몰수·추징(안 제70조 제3항 신설 등)	2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0. 23.

다. 회 부 일 : 2024. 10.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타인의 불행이나 사건, 사고 등을 공론화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일명 “사이버랙카”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협박 및 사이버 폭력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결과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 형의 경우 그 금액이 사이버랙카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너무나 적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사이버 명예훼손 및 불법정보 규제 개관

□ 사이버 명예훼손죄

-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허위사실 명예훼손죄)¹⁾.
-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사자 명예훼손죄)²⁾,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³⁾.

1)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사이버 명예훼손죄)⁴⁾.

-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정보의 반복·재생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임.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체계>

구분		구성요건	법정형
형 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7조 제1항)	공연히 <u>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	공연히 <u>허위의 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자 명예훼손 (제308조)	공연히 <u>허위의 사실</u> 을 적시하여 <u>사자</u> 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3)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분		구성요건	법정형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u> 공연히 <u>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u> 공연히 <u>허위의 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제70조 제1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u> 공공연하게 <u>사실</u>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u> 공공연하게 <u>거짓의 사실</u>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정보 규제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를 규정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⁵⁾.

5)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및 동법 시행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불법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6).

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6) 방통위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통위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법원의 명령 등(안 제44조의11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불법정보 유통 등 침해행위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안 제44조의11 제1항).
 - 침해행위의 정지
 - 불법정보의 삭제
 -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특정 계정의 정지
 - 불법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 위의 형사 기소 결과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제2항).
- 법원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동시에 선고(고지)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안 제75조의3 신설).
 - 불법정보의 삭제
 -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계정의 정지·해지·폐쇄

- 불법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 그 밖에 불법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44조의11(불법정보 유통에 관한 법원의 명령) ①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불법정보 유통 등 침해행위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u>1. 침해행위의 정지</u> <u>2. 불법정보의 삭제</u> <u>3.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특정 계정의 정지</u> <u>4. 불법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u> <u>5.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u> <u>② 제1항의 경우에 이 법에 따</u>

현행	개정안
<u><신설></u>	<u>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u> <u>제75조의3(형벌과 조치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7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u> <u>1. 불법정보의 삭제</u> <u>2.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계정의 정지·해지 또는 폐쇄</u> <u>3. 불법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u> <u>4. 그 밖에 불법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다. 검토사항

- 최근 명예훼손 정보,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2021년 158,085건, 2022년 248,130건, 2023년 264,92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 또는 명예훼손의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선고·고지하는 경우에 불법정보의 삭제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권리침해 등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법원의 명령(안 제44조의11)

- 현행 「저작권법」은 동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⁷⁾,

7)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그 조치명령의 일종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불법복제물의 삭제,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특정 계정의 해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8).

○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행위에 관하여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불법정보의 삭제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됨에 따른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원의 조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안의 ‘법원’은 형사의 기소에 따른 형사소송을 관할하는 형사법원이 될 것이고,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원고’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안의 ‘법원’은 형사의 기소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이 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두 경우를 나누어 검토함.

(1) 개정안의 ‘법원’이 형사법원인 경우

-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일반 국민 또는 범죄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公法)임⁹⁾.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명령의 경우 정보의 추가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형사제재와 성격이 다르므로, 형사법원이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법의 취지 및 형사소송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 또한, 개정안 제44조의11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에서의 판결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의 권리침해 여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판결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므로, 형사소송에서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9) 오영근·노수환, 「형법총론」, p.3-5

(2) 개정안의 ‘법원’이 민사법원인 경우

- 첫째, 현행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도 개정안에 다른 명령과 유사한 임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민사집행법은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영화 제작·상영금지, 기사게재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¹¹⁾.
- 따라서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해서도 개정안의 조치명령과 유사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치명령을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 둘째,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과 별도로 조치명령을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형사의 기소가 있다는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불법정보 해당 여부나 원고의 권리침해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침해행위의 정지, 불법정보의 삭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계정의 정지 등 조치명령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10)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11) 관련 판례(예): 대법원 2019. 3. 6 자 2018마6721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96호

불법정보로서 해당 정보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임.

○ 또한, 불법정보의 삭제 등 일부 조치의 경우 일단 시행되고 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형사 기소 여부를 이러한 명령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원인이 되는 행위가 같다고 하더라도 형사 기소에 따른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별개의 소이고,

조치명령이 원고 및 피고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치명령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형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¹²⁾, 형사의 기소가 있다는 사실이 불법정보 및 권리침해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형벌과 조치명령 등의 병과(안 제75조의3)

- 개정안은 법원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동시에 선고·고지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상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부 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이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⑨ (생략)

- 이러한 보호관찰 등은 형벌은 아니나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제재에 해당함¹⁴⁾¹⁵⁾.
- 반면 안 제75조의3에 따른 조치명령의 경우 불법정보의 확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개정안의 조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것은 형법의 취지 및 형사소송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한편, 안 제44조의11 및 제75조의3과 관련하여, 형사 기소 및 유죄 판결·약식명령 선고·고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 등 조치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판례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형사제재의 일종인 보안처분으로 보고 있음(대판 1997.6.13. 97도703, 대결 2008.7.24. 2008어4)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불법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¹⁶⁾,

현행 방통위법 및 동법 시행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불법정보의 삭제·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⁷⁾.

○ 일반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시정요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이 기소 및 판결에 비해 신속한 절차에 해당하므로,

16)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17) 방통위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통위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이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조치 명령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 입장임.
- 「저작권법」상 유사 규정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 유포로 인한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피해 등이 저작권법상 재산권 침해보다 피해의 범위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형사의 기소 절차 등을 포함한 소송절차 진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반면, 불법정보는 익명성, 복제성, 빠른 전파가능성 등으로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의 조치명령이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피해자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에 따라 법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그 이행을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조치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3.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몰수·추징(안 제70조 제3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상습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안 제70조 제3항 신설).
-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안 제75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벌칙) ①·② (생략)	제7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5조의2(몰수·추징) <u>제72조제1항제2호</u>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제75조의2(몰수·추징) <u>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u> ----- ----- -----

현행	개정안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 ----- ----- ----- ----- -----.

다. 검토사항

-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익을 획득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획득하는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최근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비방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 중인 한 유튜버는 관련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 유명인의 사건사고 또는 의혹 관련 영상을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하던 일부 유튜버들이 유명인의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유명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음.
- 이에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획득한 금품 등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중처벌 관련(안 제70조 제3항)

- 형의 가중이란 개별적인 범죄에 관해 법정형을 특정한 경우에 일정한 비율로 무겁게 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총칙에 따른 일반적 가중사유¹⁸⁾ 외에 특정한 범죄에만 적용되는 가중사유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여야 함.
- 또한 양형과 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 통설은 형벌은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책임주의가 양형의 지도원칙이 된다고 보고 있음¹⁹⁾.
- 개정안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가중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18) 특수한 교사·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누범가중, 경합범가중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19) 오영근·노수환, 「형법총론」, p. 594.

- 다만 현행 「형법」은 일반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형의 가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이미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만 형의 가중규정을 두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어 보임.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려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2403호,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²⁰⁾.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범죄 예방을 위한 가중처벌을 수용하는 입장임.

□ 몰수·추징 관련(안 제75조의2)

- ‘몰수’란 범죄의 반복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고,

20) 해당 개정안은 ① 상습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범하거나, ②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추징’이란 몰수하여야 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말함.

○ 개정안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몰수는 징역형,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형의 일종으로,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²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중대범죄’에 포함하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등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²⁾²³⁾.

21)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의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임의적 몰수를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²⁴⁾.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규정하려는 동법 개정안 다수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²⁵⁾.
-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훼손 정보 게시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수익의 몰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므로 개정실익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0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23)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장기 3년)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장기 7년) 모두 ‘중대 범죄’에 포함됨.

24) 다만, 「형법」은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입법례와 같이 개별법상 벌칙으로 규정하여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25) 의안번호 제2202372호(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제2202475호(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제2202842호(이정현의원 대표발의)